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결과 농관원, 위반 판매행위 46건 적발

오리협회 신고-강력단속 요청으로
지난해 보다 적발 건수 크게 증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유명 피서(관광)지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 표시를 점검해 위반업체 254개소(품목 265건)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유통 현황 모니터링과 함께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와 유통 정보공유를 통해 지난해 대비 수입량이 증가해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돼지고기, 오리고기(훈제) 등을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수입량: 돼지고기 ('23.6) 27만6천톤 → ('24.6) 31만7천톤(전년비 14.9%), 오리고기(훈제) ('23.6) 4천4백톤 → ('24.6) 6천톤(전년비 40%)

단속반은 138개반 285명으로 편성되며, 축산물수입업체, 식육가공업체, 식육도·소매점, 유명체인점·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별꿀, 식육부산물, 식육가공품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1억 이하의 벌금), 미표시 과태료(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254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116건(43.8%), 닭고기 52건(19.6%), 소고기 47건(17.7%), 오리고기 46건(17.4%), 염소고기 4건(1.5%) 순으로 나타났다.



오리고기(훈제)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사례

(서울특별시 소재) 배달앱을 통해 중국산 오리고기를 조리·판매하면서
오리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 365kg / 위반금액 380만원) → 형사입건

위반업체는 지난해 대비 45개소(21.5%)가 증가했으며, 특히 오리고기는 지난해 9건에서 4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업체 중 중국산 오리고기 등 국내산으로 판매한 144개 업체를 형사입건하였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3,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한국오리협회는 농관원에 중국산 열처리, 태국산 냉동 오리고기 수입량 증가에 따라 원산지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온·오프라인에 오리고기 판매처를 조사하여 농관원과 식약처에 원산지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박하담 한국오리협회장(오리자조금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오리농가들과 함께 오리협회는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수입산 오리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오리고기에 대한 인식이 떨어질까 걱정”이라며 앞으로도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물 원산지 표시업체 단속 장면